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민간 비영리 단체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 중인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업무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과 관련된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기 위해 필요한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관계부처 합의 전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”를 “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(이하 “한국환경공단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협회”를 “한국환경공단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협회의 장”을 “한국환경공단 이사장”으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협회”를 “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제1호 중 “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”을 “한국환경공단”으로 한다.

제53조제1항 중 “협회”를 “한국환경공단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협회는”을 “한국환경공단은”으로 한다.

제55조제4호 중 “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”을 “한국환경공단”으로 한다.

제5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“장 또는”을 각각 “장,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또는”으로 한다.

제58조 중 “장 또는”을 “장,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또는”으로 한다.

별표 13의 화학물질 확인 업무 현황의 보고자란 중 “협회의 장”을 “한국환경공단 이사장”으로 하고, 같은 표 자료보호 신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 현황의 보고자란 중 “협회의 장”을 “협회의 장·한국환경공단 이사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뒤쪽 중 “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”를 “한국환경공단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뒤쪽 중 “화학물질관리협회”를 각각 “한국환경공단”으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()협회”를 “한국환경공단 이사장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뒤쪽 중 “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”를 각각 “한국환경공단”으로 하며, 같은 서식 뒤쪽 중 “화학물질관리협회”를 각각 “한국환경공단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중 “협회”를 “한국환경공단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()협회장”을 “한국환경공단 이사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68호서식 중 “()협회”를 “한국환경공단 이사장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”를 “한국환경공단”으로 하며, 같은 서식 중 “화학물질관리협회”를 각각 “한국환경공단”으로 한다.

별지 제79호서식 중 “유역(지방)환경청장·협회의 장”을 “유역(지방)환경청장·한국환경공단 이사장·협회의 장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국립환경과학원, 화학물질안전원, 유역(지방)환경청, 협회”를 “화학물질안전원, 유역(지방)환경청, 한국환경공단, 협회”로 한다.

별지 제80호서식 중 “유역(지방)환경청장·협회의 장”을 “유역(지방)환경청장·협회의 장”으로 한다.

경청장·한국환경공단 이사장·협회의 장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뒤쪽 제 1호 중 “국립환경과학원장, 지방환경관서의 장”을 “지방환경관서의 장, 한국환경공단 이사장”으로 하며, 같은 뒤쪽 중 “국립환경과학원, 화학물질안전원, 유역(지방)환경청, 협회”를 “화학물질안전원, 유역(지방)환경청, 한국환경공단, 협회”로 한다.

별지 제81호서식 중 “유역(지방)환경청장·협회의 장”을 “유역(지방)환경청장·한국환경공단 이사장·협회의 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화학물질확인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을 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명세서에 제1항 각 호의 서 류 중 화학물질확인에 이용한 자료를 첨부하여 <u>법 제53조제1 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 리에 관한 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다)</u>에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 우 시험용 · 연구용 · 검사용 시 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 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 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 또는 수입 후 30일 이내에 제출 할 수 있다.</p> <p>③ (생 략)</p>	<p>제2조(화학물질확인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「<u>한국환경공 단법</u>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(이하 “<u>한국환경공단</u>”이라 한다)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)</p> <p>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화학 물질확인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 는 별지 제2호서식의 증명신청 서에 성분명세서를 첨부하여 <u>협 회</u>에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증명신청서를 받은 <u>협회의 장</u>은 해당 화학물 질이나 그 성분이 법 제9조제1 항 각 호의 화학물질에 해당하</p>	<p>제3조(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<u>한 국환경공단</u>----- -----</p> <p>② ----- <u>한국환경공단 이사장</u>----- ----- -----</p>

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
식의 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
내주어야 한다.

제4조(화학물질 통계조사 등) ①

· ② (생략)

③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
청장(이하 “지방환경관서의 장”
이라 한다)은 화학물질 통계조
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
업무의 지원을 협회에 요청할
수 있다.

④ · ⑤ (생략)

제22조(검사기관 등) ① 법 제24
조제2항에서 “환경부령으로 정
하는 검사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
의 기관을 말한다.

1.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
한국환경공단

2. ~ 4. (생략)

② ~ ④ (생략)

제53조(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
적 보고 등) ① 법 제49조제1항
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는 별
지 제68호서식의 실적보고서에
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부
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매년 8
월 31일까지 협회에 제출해야

-----.

제4조(화학물질 통계조사 등) ①

· 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법 제53조제1항
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
에 관한 협회(이하 “협회”라 한
다)-----.

④ · ⑤ (현행과 같음)

제22조(검사기관 등) ① -----

-----.

1. 한국환경공단

2. ~ 4. (현행과 같음)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53조(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실
적 보고 등) ① -----

----- 한국환경공단-----

한다. 다만, 화학물질 통계조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일부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자료를 제외하고 제출할 수 있다.

1. ~ 6. (생략)

② 협회는 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된 전년도 실적보고서를 종합·분석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③·④ (생략)

제55조(화학물질 검사기관)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이 유독물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
1. ~ 3. (생략)

4. 「한국환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단

5.·6. (생략)

제57조(자료보호의 신청 등) ①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에 다음 각

-----.

1. ~ 6. (현행과 같음)

② 한국환경공단은 -----

-----.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55조(화학물질 검사기관) -----

-----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4. 한국환경공단

5.·6. (현행과 같음)

제57조(자료보호의 신청 등) ① -----

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, 화학물질안전원장,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2. (생략)

② 영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연장 신청서에 제3항에 따른 결과서를 첨부하여 자료보호기간 만료 30일 전에 환경부장관, 화학물질안전원장,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환경부장관, 화학물질안전원장,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료보호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제58조(보호자료의 관리) 환경부장관, 화학물질안전원장,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은 관리대장의 비치, 관리자의 지정 등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료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

----- 장,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또는 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장,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또는 -----.

③ -----
----- 장,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또는 -----
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제58조(보호자료의 관리) -----

----- 장,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또는 -----

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호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.

-----.